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57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 권성동·최은석·윤한홍

김승수 · 엄태영 · 김장겸

한기호 · 조승환 · 김상욱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 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마약류의 투약 등에 관한 검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 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 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직무상 필요한 조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마약류의 투약 등에
	관한 검사) ① 경찰청장과 해
	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
	<u>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u>
	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
	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
	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해
	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직무상 필요한 조치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③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
	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